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익성 심사 조건 부여 및 주식 변동의 보고·통지 의무 신설 등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01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익성 심사와 인가 제도 개관	3
2. 공익성 심사 조건 부여 및 주식 변동의 보고·통지 의무 신설 ..	8
3. 기간통신사업자 비자발적 최대 주주의 인가 대상 포함	1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2. 20.

다. 회부연월일 : 2025. 2.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함)를 받도록 하고 있고,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경우에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는 공익성심사 대상이나 인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 심의 등 만을 거치고 있어,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피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존재함. 아울러 기존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여 비자발적인 최대주주 변경 발생 시,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공백상황으로 공익성 심사 신청이 늦어지고, 정부의 공익성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

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대상으로 하여금 보유주식 수 또는 보유 목적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안 제10조제5항 및 제9항 신설),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4호 등).

Ⅲ. 검토의견

1. 공익성 심사와 인가 제도 개관

가. 공익성 심사 제도

공익성 심사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등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제1항1)에서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익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익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제6항2)에 따라, 중요 통신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1)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본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4.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무선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함.

<공익성 심사 제도의 요건>

구분	내 용
목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등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공익성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심사
심사대상	○ 발행주식의 15% 이상 소유 ○ 최대주주 변경 ○ 외국정부·외국인과 임원 임면·영업 양수도 등 협정체결
신고 또는 심사요청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그 주주는 공익성 심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신고하거나, 사유가 발생하기 전 심사를 요청
신고 의무 대상 기간통신사업자	① 중요통신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② 우주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③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등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 ④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⑤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공익성심사위원회	과기정통부 차관(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조치	심사결과 공공이익 저해가 인정되면 판단되면 협정 변경,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을 명할 수 있음

2.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무선국 중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5조제2항제1호·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4.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5.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그 주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제2항3)에 따라 공익성 심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신고하거나, 사유가 발생하기 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성 심사 신고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① 중요통신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② 우주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③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등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 ④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⑤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음.

공익성 심사를 실시하는 공익성심사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차관(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제5항4)에서는 공익성 심사의 결과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정 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익성 심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3)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②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의 결과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정 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나.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 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1항⁵⁾에서는 기간통신사업의 안정성과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이용자 보호 및 공익 증진을 도모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 제도>

구분	내 용
목적	기간통신사업의 안정성과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이용자 보호 및 공익 증진을 도모
인가대상	①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②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려는 자 ③ 등록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④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등
심사내용	①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②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③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④ 이용자 보호 ⑤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조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권 행사의 정지나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고,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건의 이행을 명할 수 있음
조건 부여	인가 시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5)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인가 대상으로는 ①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②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려는 자, ③ 등록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④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가 심사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2항6)에 따라, ①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②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③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④ 이용자 보호, ⑤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인가 시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6)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2. 공익성 심사 조건 부여 및 주식 변동의 보고·통지 의무 신설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대상으로 하여금 보유주식 수 또는 보유 목적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공익성 심사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공 이익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여, 공익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및 제9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 소유 제한) ① ~ ④ (생략)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 소유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본다.	⑤ ----- ----- ----- ----- ----- ----- ----- -----.
1. 2021년 1월 1일 현재 <u>제10조제6항</u>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1. ----- <u>제10조제7항</u>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u>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u> <u>⑨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제32조의10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동을 알게 된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13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	제13조(이행강제금) ① ----- -----제10조제6항----- ----- ----- ----- -----

현행	개정안
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 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 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7. (생략)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 ----- ----- -----. 1. 제10조제6항----- ----- ----- ----- ----- ----- 2. ~ 7.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힐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익성 심사의 실효성과 국가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하다고 보임.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외국 자본이 사실상 경영권을 획득하거나 경영권 변경의 위협이 있는 경우 중대한 정보의 유출, 정보 보안의 위협 등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공익성 심사를 통해서 국내 데이터 보관 의무, 보안 기준 강화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최대 주주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 운영이 독점적 위치를 활용하여 소비자 후생에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공익성 심사를 통해서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이용자 편익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음.

○ 다음으로 동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동을 알게 된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주식 변동에 따른 신고 및 보고 의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현행법과 동 개정안을 비교하면, 동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⁷⁾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소유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통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주식의 보유목적 변경 시에도 통지 의무를 신설하였음.

또한, 최대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여 공익성을 보호하고 대량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한 측면은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적 역할을 감안할 때,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 통지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특정 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대해 조기에 감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

7) 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 ② 전년도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 또는 회선 수가 50만 회선 이상인 회선설비 보유 사업자: KT, LGU+, SKB, SKT 등 4개 사

<개정안에 따른 주식 변동에 따른 신고 및 보고 의무 변경>

구분	현 행 (법 제10조제2항)	개정안 (법 제10조제9항 신설)
신고대상 (통지·보고의무)	15% 이상 소유 (특수관계인과 합산)	5% 이상 소유 (특수관계인과 합산)
주주, 기간통신사업자 신고·보고의무	-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30일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신고 의무	- 5% 이상 소유하게 된 주주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의 변동을 알게된 즉시 과기정통부에 보고 -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보유목적 변경시 통지 필요 여부	없음	주주의 통지 의무 있음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의무이행 확보수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4조제5항제1호)	없음

- 특히, 동 개정안의 해당 부분은 비자발적 최대 주주의 변경에 있어 기간통신사업자가 조기에 이를 알게 함으로써, 공익성 심사가 기한 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

○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주식 보유 목적이 변경된 주주에게 해당 사실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의무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의 총수 중 1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주주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제2항⁸⁾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5항제1호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동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거나 주식 보유목적이 변경된 주주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 의무가 있으며, 최대주주 변경시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의무이행수단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적인 의무 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8)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②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본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4.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주주 등의 신고 및 통지 의무이행 확보 수단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의무부과	의무이행수단	의무부과	의무이행수단
주식수 변경 없이 보유목적 변경 시	없음	없음	5% 이상 통지 의무 (10조9항) (기간통신사업자)	없음
주식수 변경 시	15% 이상 신고 의무 (10조2항) (과기정통부)	과태료 부과 (104조5항)	15% 이상 신고 및 통지 의무 (10조2항 및 9항) (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업자)	신고의무 위반시만 과태료 부과 (104조5항)
			5~15% 미만 통지 의무 (10조9항) (기간통신사업자)	없음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의무	없음	없음	기간통신사업자의 과기정통부 보고 의무 (10조9항)	없음

- 동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익성 심사시 조건 부과 근거 신설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공익성심사 시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부 결정만이 가능하고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근거는 미비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 및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위한 효과적 정책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동의하고 있으며, 주주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지·보고 절차 신설에 대해서는 비자발적인 최대주주 변경

발생시 주주나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공백 상황이 발생 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공익성심사 신청 기한(발생일로부터 30일) 위반 소지가 있는 등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여 공익성을 보호하고 대량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며, 비자발적인 최대주주 변경 시 공익성 심사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동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의무의 이행 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 주주도 인가 대상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대상에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나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된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4호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 ----- ----- -----. ----- -----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	4. -----

현행	개정안
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u>되려는 자</u>	----- ----- ----- --- <u>되려는 자나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주주가 된 날 이후에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다.]</u>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2024년 국민연금공단의 KT 주식 매각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인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 2024년 3월,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여 지분율이 7.51%로 낮아진 반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KT에 대한 지분율은 현대자동차 4.86%, 현대모비스 3.21%로 총 8.07%로 나타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었으며, 비자발적으로 KT의 최대주주가 된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주식 매입 등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주주의 매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과 실질 관계의 동일함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입법 취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주식 시장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처분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기업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식 매입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는 기업 등은 현행법에 따라 인가 대상이 되며, 이를 인식하고 주식 처분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다른 주

주의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사전 예측 없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동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 대상에 비자발적 최대주주의 변경을 포함함으로써 공익성 심사 시 검토하지 않는 경쟁 영향,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심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종합적으로 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로 변경되었다는 실질 관계가 동일함에도 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에 대해서도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형평성 측면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있으나, 해당 주주의 입장에서는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등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5
